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93

발의연월일: 2020. 9. 15.

발 의 자:윤준병・김민철・오기형

어기구 • 이해식 • 허종식

최종윤 • 인재근 • 장경태

김주영 · 강선우 · 위성곤

송옥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제11조)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의5).

법률 제 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의 정비에"를 "2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로,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한다"로 한다.

제65조의5제1항 본문 중 "빈집이"를 "빈집이 제6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빈집인 경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빈집이"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 위의 빈집정비에-----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할 수 있다. -----시행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의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 등) ① -----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집이 제65조의3제1항제1호부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 | 하는 특정빈집인 경우 빈집정비

지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 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 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 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 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 빈집이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